

제334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8 호

국회 사무처

2015년7월6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설훈) 사임의 건
3. 산업통상자원위원장(김동철) 사임의 건
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5.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보궐선거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2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5.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된 안건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5
 - o 의사진행의 건 22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3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3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3
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이개호·부좌현·홍의락·박남춘·주승용·김기준·이목희·박민수·강기정 의원 발의) 23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3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3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3

1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3
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23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3
1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3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최봉홍 · 권은희 · 이명수 · 이한성 · 이노근 · 윤명희 · 이상일 · 조명철 · 김태환 의원 발의)	25
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김승남 · 윤후덕 · 배재정 · 박기춘 · 전정희 · 배기운 · 진성준 · 이윤석 · 김광진 의원 발의)	25
19.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이개호 · 유대운 · 정청래 · 부좌현 · 김성곤 · 우원식 · 최민희 · 박민수 · 김기준 · 김광진 · 전해철 의원 발의)	26
2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 · 김승남 · 강동원 · 진성준 · 이찬열 · 박민수 · 송영근 · 김현미 · 윤후덕 · 백군기 · 김광진 의원 발의)	26
21.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6
2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 · 김종태 · 장윤석 · 황인자 · 박명재 · 서상기 · 홍지만 · 윤재옥 · 강은희 · 이완영 · 권은희 의원 발의)	26
2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최규성 · 강기정 · 김영록 · 부좌현 · 주승용 · 유성엽 · 박민수 · 김성곤 · 전해철 의원 발의)	26
24.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이개호 · 정청래 · 이목희 · 박남춘 · 김광진 · 조정식 · 박민수 · 정호준 · 강기정 의원 발의)	26
2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부좌현 · 박주선 · 정성호 · 박민수 · 김영록 · 김광진 · 강기정 · 박남춘 · 진선미 · 김우남 의원 발의)	26
2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대 의원 대표발의)(안호대 · 강석호 · 이철우 · 이노근 · 염동열 · 박인숙 · 김용태 · 신의진 · 김재경 · 이재영 · 윤진식 · 김정록 의원 발의)	26
2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7
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8
2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8
3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변재일 · 김우남 · 이윤석 · 김영환 · 강기정 · 강창일 · 최규성 · 김성곤 · 김광진 의원 발의)	28
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8
32.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8
33.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8
3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8
3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9
3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 · 김광진 · 박기춘 · 윤호중 · 정세균 · 한명숙 · 이미경 · 강동원 · 설훈 · 김윤덕 · 김영주 · 안규백 · 김관영 · 진선미 의원 발의)	29
37.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9
38.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9
3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9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9
41.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1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제출)	31
4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제출)	31
4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제출)	31
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제출)	31
46.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제출)	31
4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 · 안홍준 · 이한성 · 김우남 · 유의동 · 김재원 · 조원진 · 이인제 · 최규성 · 문정림 의원 발의)	32
4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 · 안홍준 · 김승남 · 이한성 · 박민수 · 김종태 · 유의동 · 조원진 · 이인제 · 문정림 의원 발의)	32
4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 · 노철래 · 송영근 · 이만우 · 강기윤 · 강은희 · 강석훈 · 김광림 · 박명재 · 정우택 · 황주홍 의원 발의)	32
5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이운룡 · 유의동 · 조명철 · 류성걸 · 유일호 · 박대동 · 이강후 · 김상민 · 김동완 · 강길부 · 신성범 · 정갑윤 의원 발의)	32
51.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제출)	33
5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김상훈 · 김승남 · 김종태 · 박윤옥 · 박인숙 · 서정원 · 송영근 · 이노근 · 전순옥 의원 발의)	33
54.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김상훈 · 김승남 · 김종태 · 박윤옥 · 박인숙 · 서정원 · 송영근 · 이노근 · 전순옥 의원 발의)	33
5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56.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5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 · 황영철 · 김종태 · 송영근 · 홍철호 · 주영순 · 최봉홍 · 권성동 · 배덕광 · 문대성 의원 발의)	34
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제출)	34
5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6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출)	35
6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출)	35
6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출)	35
6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출)	35
6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 · 문병호 · 이윤석 · 박민수 · 주승용 · 이개호 · 조경태 · 노영민 · 박주선 · 변재일 의원 발의)	35
65.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 · 나성린 · 이노근 · 김성태 · 박민식 · 김태원 · 박대동 · 신경림 · 문대성 · 함진규 의원 발의)	35
6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출)	35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36

(14시24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유승민 의원 외 159인으로부터 제335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7월 8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에 홍일표 의원

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진후 의원 등 69인으로부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부터 2014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14시26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9일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6월 25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그동안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간에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헌법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77조 및 제

76조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재의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의 요구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5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를 요청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와 정부 간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의 요구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동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지만 헌법정신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입장에서 분명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대로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수범자가 그 의미와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수정·변경 요청받은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변경 여부 및 그 내용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큼니다.

현행 국회법에서 정부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수정·변경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변경한 점, 본회의 의결안이 제안이유에서 입법목적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

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점 또 본회의 의결안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른 번안 절차가 아니라 국회법 제97조에 따른 의안정리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요청받은 그대로 수정·변경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의 장에게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정부가 행정입법의 내용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수정·변경하여야 한다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이 수정·변경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 침해의 정도가 더욱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헌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직접 심사하여 수정·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107조제2항에서는 구체적 규범 통제방식을 채택하여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이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심사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구체적 규범 통제만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법원이 헌법상 부여된 심사권을 통하여 행정입법을 위헌이나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위헌이나 위법성을 선언할 뿐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다시 정부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내용대로 정부가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하여

야 한다면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심사권보다 훨씬 포괄적인 심사권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입법을 수시로 수정·변경하여야 한다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행 중인 행정입법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범인 행정입법의 예측 가능성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하고 있고,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큼니다.

이와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도 심각하게 저해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어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깊이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의 질의 신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5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범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전 서구을 출신의 국회의원 박범계입니다.

참으로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국무총리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청문회에서 뵈고 또 뵈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이런 일로 충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는데 역시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그동안의 경력에 맞게끔 다시 또 이 정국의 전면에서 등장하셨습니다.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칭을 좋아하지 않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동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추구했던 것은 국가의 안전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 이것에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고 하면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합당한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이번 국회법이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법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과 관련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률에는 국회입법이 있습니다, 법률입니다. 그 하위 법률로써 또 행정입법들이 있습니다. 행정입법과 국회입법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 총리께서 하위법률이라고 그랬는데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에 있는 법령이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맞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러면 하위에 있으면 그 상위법을 모순하면 되겠습니까,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거기에 법률적인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범계 의원** 저는 이번 거부권 사태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중히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이와 같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곳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정족수를 채워서 소신에 따라 표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엄청난 국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셨습니다.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 국민을 끌고 가시기는 했지만 대통령께서 고도의 정치적 개입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국회법의 위헌 여부 이것이 큰 쟁점이 됐고, 그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면 행정입법이 어려워지고 행정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총리

의 인식과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님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법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재의 요구를 드린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의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말씀처럼 정부의 정책을 앞뒤에서 끌어 주고 밀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삼권분립에 의해서 피차 지원하고 견제하는 양쪽의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러면 끌어 주고 밀어주는 곳이다,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인식은 절반은 틀린 인식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맞다 틀리다 하는 것보다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왜 재의 투표를 비공개로 하는 줄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들의 표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범계 의원** 이것은 정책과 법안에 관한 것입니다. 왜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민주주의된 국가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표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비밀투표라도 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는 뜻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비밀투표를 하는 이유가 의원님들의 투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쎈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회를 마치 발 밑에 있는 신하처럼 업신여기셨습니다. 정중하게 재의를 요구하면 그뿐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더더군다나 국회는 당초 의결했던 내용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청구권’이라는 말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청할 청(請)에다가 구할 구(求)

자, 권리 권(權) 자입니다. 요청해서, 청해서, 부탁해서 들어 주지 않으면 구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이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당초 만든 국회법 안에는 ‘요구’로 되어 있는 것을 ‘요청’으로 바꾸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권능을 스스로 국회는 참은 겁니다. 규범력의 절반을 싹둑 잘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헌성이 있다,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시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박범계 의원 ‘요구’와 ‘요청’은 다른니까, 틀립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게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대차는……

○박범계 의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요? 청구권의 ‘청’은 청할 청(請) 자, 청해서 안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모법의 변경을 통해서 위반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효력을 정지시키고 소멸시키고 모법에 규정하면 그만입니다.

‘요구’와 ‘요청’은 다릅니다. 국회 스스로, 어쩌면 대통령의 면을 생각해서 스스로 규범력의 절반을 싹둑 잘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해 가지고 재의 요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국회를 업신여기고 발 밑의 신하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국회로 하여금 백기 투항을 하라는 것이고 국회로 하여금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군주제, 입헌군주제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보좌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규범 의식, 헌법 의식, 대의민주주의 의식을 바꿔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총리제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은 여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정중하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것이 정중하게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밀어주고 끌어 주는 견인차 역할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것이 정중한 요청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오늘 심사 요청서에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까지 이르게 된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1998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에도 상임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부는 그 수정요구권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고 이래서 이렇게 표변해서 입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법안이 토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제출됐던 법안에는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처리의무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차이가 있다면, 마이크는 꺼졌습시다마는, 오늘 재의된 이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발의했던 그 법안이 다시 제기되는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법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비슷한 법안이 다시 제기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의원 들어가십시오.

○의장 정의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마이크가 꺼졌지만,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헌법상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투표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정, 대의

민주주의를 시험할 수 있는 가늠자의 그러한 장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장 정의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충돌하는 경우 과연 우리에게 위임된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 버릴 것인지 새누리당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여쭙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정의화** 자, 박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범계 의원** 이 두 가지 민주적 정당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이 상이고 무엇이 하이고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종이나는 상호규범적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의 명령이다,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라는 점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간곡히 호소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의화**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구요. 마이크가 꺼지면 국민들이 그 훌륭한 연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

충남 공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을 대표하는 이 민의의 전당 국회가 청와대의 지시 한마디에 꼭두각시가 되어 버린 참으로 비참한 현실에 우리는 함께 직면해 있습니다.

귀중한 피를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신독재의 암울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참담함을 느끼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에 국민은 없고 오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의 오만과 청와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영혼 없는 거수기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새누리당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표결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으며 극심한 가뭄으로 300만 농심이 타들어 가는 상황에서 정쟁의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성의 문제도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과 독선의 표출일 뿐입니다.

메르스 사령관을 갈망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오로지 친박 사령관으로 국회마저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독선과 오만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혹시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신 경제활성화법이 몇 개쯤 되는지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정확하게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십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대통령께서는 이 경제활성화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경제가 안 되는 것으로 강조를 하시면서 그 주범으로 국회를, 야당을 지목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있었습니다.

○**박수현 의원** 그런데 총리께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총리, 정확하게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약 30건입니다. 그중에 몇 건이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마찬가지로 제가 기수해 보지는 않았습시다라는 통과된 것도 있고 통과 안 된 부분도 있는데 통과 안 된 것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법안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총리,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건 중에 이미 21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법안이 처리가 된다면 2건이 더 통과가 됩니다. 23건이 통과됩니다. 30건 중에 23건의 경제활성법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국회의 역할을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야당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

가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총리,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정말 이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역시 편향된, 그런 편협함에서 비롯한 충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아까 총리께서 이유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차례 그동안 발의된 사례를 적시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 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만 적시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동 발의했던 2건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일부러 빼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체적인 법리를 국회에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 우리 총리 답변을 보면 참으로 수려한 말씀씨와 점잖은 태도로 마치 굉장한 신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리, 이것은 고의로 빼 것 맞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야당 의원 발의만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혹시 대통령이 공동 발의했던 그 법안에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수단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아실까 봐 그래서 일부러 빼 아 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 않고, 법률 검토 끝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시다마는 과거의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부에 대해서 재량권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수현 의원 총리,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읽어 드리는 내용을 잘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의 사실과 칼럼의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여당을 향해 숙제를 내 주듯 법안 처리만을 일방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 거칠고 직설적이다, 박 대통령 자신도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이 눈 한번 부라렸다고 국회의원 160명을 대표하는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용서를 비는 장면은 해외 토픽감이다, 대통령의 개인감정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를 갈아치우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다, 분노의 정치는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다, 지금은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불러 재떨이를 던지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자원조달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야단칠 수 있었던 박정희 시대와 다르다’ 이런 사실과 칼럼이 6월 25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 언론에 실린 것 같습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언론에 실린 부분에 관해서 제가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원님과 국회에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 총리는 지금 대통령을 총괄적으로 보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읽어 드린 신문의 사실과 칼럼은 진보 언론의 것이 아니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으로부터 이러한 지탄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국정 공백과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도력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론과 언론의 의견과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국정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총리에게 마지막 한 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온 국민 정치를 하셔야 됴에도 불구하고 두 국민 정치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이 두 국민 정치, 양극화의 정치가 아니라고 국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렇게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저대로도 노력을 하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대로도 판단하셔서 일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초선 의원인 저는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박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전라북도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총리가 설명한 재의 요구에 대해서 그 이유가 근거 없다는 점 또 지나치게 과장시켜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총리와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지적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삼권분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의 운영을 서로 협조하고 조력하지만 또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적어도 대통령의 심기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원리는 아닌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의 삼권을 서로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삼권분립의 역사를 법조인이니까 잘 아실 텐데, 삼권분립이 태동되게 된 역사적 사유와 관련해서 삼권분립을 시키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권한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그런 권한의 편중 때문에 그것을 분점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결국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의 원리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의 권한이 균형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장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삼권분립 원칙의 최종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체면이나 아집을 지켜 주는 원리로서 작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 취지에 벗어나는 대통령령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 대통령령이 지속되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 상태에 대해서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치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헌법상 별도의 시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헌법이 정한 것은 구체적 규범통제로서 대법원에 그 권한을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심사권이 법원에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그러면 헌법에 만약에 시행령이 국회에서 정한 모법에 위반되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 경우에 치유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까, 안 정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아니, 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까, 안 정하고 있습니까? 구체적 규범통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까, 안 정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존의 정부 법에 보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김관영 의원** 그러면 아까 총리께서 위헌의 근거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죽 오늘 설명을 하셨는데, 합헌이다, 이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합헌이다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합헌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 보셨거나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이 국회법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김관영 의원** 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회법.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그러면 그 논의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하는 근거의 논리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 범위의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마는 그런 기본논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그러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번에 이 법제처의 재의 요구권,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이 보고서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개요는 봤습니다.

○**김관영 의원** 주요 내용이 뭐던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

이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그러면 이번에 국회가 국회법을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의 의중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국회에도 걱정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적어도 국회에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법을 개정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해하시는 바를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이 국회법 개정의 단초가 된, 아시다시피 그런 다른 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 법과 관련해서 조금 충분한 의견의 조희, 의견의 수렴 과정이 좀 생략된 채로 이게 넘어오면서 충분한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은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거기에 같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을 낸 것이 아니라.

○**김관영 의원** 서명을 했는데요, 제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총리께서 ‘당시에 박 대통령께서 공동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개정안,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과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과거에 발의한 법안이 행정부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을 하셨는데, 원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98년에 박 대통령께서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국회에서 통과를 한 겁니다.

다만 만약에 아까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국회

에서 저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따르지 않는다, 그 사태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법은 ‘뭘뭘 할 수 있다’, ‘이것 할 수 있다’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부에 재량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률 해석상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량은 충분히 저는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에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신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해서 삭제했던 조항을 정부가 버젓이 시행령에 넣어 왔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법 제의 요구 과정에서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저는 어안이 병병할 따름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존심과 책임감을 가져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정의화**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네 분 의원님들의 토론 신청이 있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의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 재의된 국회법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반대토론을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다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헌법 제53조4항이 명한……

○**의장 정의화** 이정현 의원님이 반대 신청하셨습니다.

○이춘석 의원 절차에 따라 재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재의는 다시 투표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재적의원 과반이 모였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국회법이 법률로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야 의원 211명 찬성으로 국회법을 통과시킨 지 겨우 38일째 되는 날입니다.

단군신화를 보면 곰은 동굴에서 썩과 마늘을 먹고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썩과 마늘도 먹지 않고 왜 38일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또다시 국회법을 찬성으로 투표하지 않는다면 단군신화가 바뀔 것입니다.

대체 국회법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권한을 넘어 모법을 침해할 때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사안을 처리하고 보고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이 정도의 통제 권한도 없이 어떻게 삼권분립을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현행 국회법은 ‘요청’이 아니라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성으로 국회법 수정안을 의결하지 못할 것이라면 내친 김에 이것도 수정합시다. ‘요청’보다 ‘통보’가 대통령께 더 버르장머리 없고 송구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관장하는 행정부에 국회가 어떻게 감히 ‘통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간곡한 마음으로 ‘요청’해 달라고 그렇게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법을 돌려보내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방법은 틀렸습니다.

애당초 모법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시행령이 없었더라면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행령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부의 주장으로서 당연히 반성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바로 시행령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야당만이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던 2010년,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을 뛰어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4대

강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바닥이 썩썩 갈라지는 논바닥을 보면서, 녹조라떼를 보면서, 큰빗이끼벌레에 물고기들이 하얗게 배를 뒤집고 폐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4대강 사업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9·11 테러가 발생하자 진상조사위를 꾸려 현직 대통령은 물론 전·현직 고위 관리까지 예외 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가 안타까움과 눈물로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국민이 바다에 수장되는 기가 막히는 일을 당했는데 여전히 진상조사를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어렵게 통과된 세월호법을 통째로 뒤집어 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로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조사를 해 놓은 자료나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시행령이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 참사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입니까? 이것이 한 점 의혹도 없는 진상조사이고 국가 대개조의 실체입니까?

국회법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만일 국회법 재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당헌 제8조제1항에 명시된 대로 여러분은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률을 보란 듯이 무력시키는 시행령 때문에 일어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께서 앉아 계신 바로 이곳은 당·정·청 협의장이 아니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그대로 퇴장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길로 나가서 국회의원이 될 때 여러분이 선서한 선서문을 시궁

창에 던져 버려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의무와 권리를 저버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째로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린 그 죄는 영원히 치욕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반드시 표로써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중한 선택과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정의화 이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네 분의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먼저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법에 대한 위헌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공부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저의 입장을 좀 한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헌법에는 75조와 그리고 95조에 명시적으로 행정부에 행정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국회에는 행정입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국회에서 제정한 국회 법에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서 제대로 그 뜻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될 경우에 또 우리 헌법은 107조2항에다가 명문으로 명확하게 대법원으로 하여금 그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위헌 논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행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로 하여금 바로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키고 그리고 국무위원, 정부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해서 그러한 자료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질의 그리고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또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

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입법을 통해서 또 국회는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해당 부처에 대한 예산 심의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엄연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하고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국회에는 역사가 있고..... 우리 국회에는 역사가 있고 우리 선배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선배 국회도 있었습니다.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그리고 옛 그저께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었고 그때마다 이권 위헌 요소가 있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선배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끝내 반영을 시키지 않아 왔었던 것입니다. 그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19대 국회, 2015년 5월 1일 날 바로 이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참석한 그 회의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선 정권 그리고 앞선 국회에서 의원들이 해 왔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존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료 의원들한테 호소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같이 알고 그리고 지적을 해 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같은 법안 하나에 대해서 어땀습니까? 야당은 분명히 강제성 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길 했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성이 약간 있다고 얘길 하셨습니다. 한 법안에 대해서 강제성 있다, 없다, 약간 있다, 이러한 법을 국민들에게 넘겨줬을 때 국민들은 이 법에 대해서 어느 쪽을 따라야 됩니까? 여당 지지자들과 야당 지지자들이 한 법에 대해서 각기 따로 놀아야 됩니까?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넘겼을 적에 일반 국민과 그리고 행정부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입법자인 우리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것은 국회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이것 자체도 굉장히 모순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규칙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부뿐만 아니고 규칙은 대법원에도 있고 그리고 선관위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그쪽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또 그쪽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을 계획하지도 않고 지금 행 정부에 대한 이런 규칙만 넣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길 합니다. ‘예산안은 수정을 하지 않느냐’ 그건 헌법에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국회에서 이렇게 이러한 법안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상수 의원 법안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변정일 의원안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법안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으시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위헌 법률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품위의 문제이고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양심을 갖고 반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정의화 정리해 주세요.

이정현 의원, 정리하세요.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의원님, 표결에 참여하십시오, 당당하게!」

하는 의원 있음)

이정현 의원, 정리해 주세요.

○이정현 의원 김윤덕 의원님,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도 경청을 못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막말을 했습니까? 제가 비난을 했습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정도도 수용을 못 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장내 소란)

○의장 정의화 자, 이정현 의원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자, 잠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정현 의원께서 의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청해 주시는 그런 예를 갖춰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원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을 출신 최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존중하지만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하나로 개정 국회법에 대한 진지한 재논쟁 없이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단정되고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국회, 특히 여당이 혼돈에 쌓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등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위임명령에 대한 통제는 삼권분립 원칙과 의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명백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의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하고 의결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에 관하여 동의권 수정권 폐지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법률명령에 대해 의회가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하원이 합동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거부권

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의 의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위임명령에 의한 강력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정 국회법이 입법부의 횡포이고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입법부 위임을 넘는 위임명령이 난무하여 이미 입법부의 지적에 따라 행정부가 이를 시정한 사례가 수많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여 위법성을 제기할 경우 이를 경청하고 소통하여 의견이 맞지 않다면 입법부를 설득하는 소통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입법부를 설득하고 위법성이 제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법권과 삼권분립 원칙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절대왕정에 대하여 투쟁한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생긴 역사적 산물입니다. 절대권력을 삼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성취하라는 역사의 명령입니다. 위임명령이 입법권을 넘어서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명령과 헌법과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무와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국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과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이백열한 분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고 특히 아흔다섯 분의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찬성하신 것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입법권을 편취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소신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그 소신을 바꾸지 말고 헌법상 보장된 국회입법권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여기에 계신 의원님 모두 재의 표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과 헌법이 위임한 입법권을 포기한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헌법적 소신을 바꾸고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을 포기하여 제왕적 대통령제가 확립된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5월 29일 소통 상생의 정신하에 밤새워 이루어 낸 여야 합의의 정치가 짓밟히지 않도록 표결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

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용기와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기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여야 간 합의로 의결 처리된 법안입니다.

제석의원 244명 가운데 211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포함한 구심오 분의 여당 의원님들도 당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불과 38일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2015년 7월 6일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표결에 참여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직속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회는 국회다워야 합니다. 국회다움이 대통령에게는 ‘배신의 정치’가 될 수 있어도 국민에게는 ‘소신의 정치’입니다. 소신의 정치를 보여 주십시오. 거부권으로 바닥까지 침몰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300명의 헌법기관이 힘을 모아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조금씩 텐트 안으로 들어와 주인을 몰아내는 낙타처럼 시행령이 법률을 넘어서는 입법의 비정상화가 만연할 우려가 큼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 명료합니다.

첫째,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가지므로 이에 수

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 40조에는 입법권을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규정하며 행정부의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부분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본연의 권한이자 기능의 연장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취임 이후 설치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헌법학원론 1246페이지에 통보만을 규정한 현행 국회법 98조2항에 대해서 행정입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로서는 약한 수준의 통제방법이라고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국회법 개정안이 사법심사권을 침해하고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는 법제처 재의 요구 설명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 수정을 요청한다고 그 즉시 무효가 되는 겁니까? 사법부가 법률에 위반된 행정입법이라고 판단해야만 그 행정입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결국 행정부와 입법부 간 법률위반 다툼이 생기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은 여전합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의 국정 마비를 가져온다는 우려는 대통령이 법률과 관계없이 행정입법으로 통치하겠다는 의도이자 헌법 체계를 부인하는 발상입니다. 행정부가 오히려 입법권을 침해하겠다는 얘기가 진배없습니다.

셋째, 국민의 의사보다 행정입법이 법률을 지배하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실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아 놓은 행정입법,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 사례가 무려 61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쪼록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의화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의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찬성 표결을 촉구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무소불위의 시행령을 통해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월권적 행위를 막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헌법가치를 지키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결과이고 또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렵게 만들어 낸 국회법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뜻을 반영한 여야 합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회는 혼란과 갈등에 빠졌고 그로 인해 산적한 국정 현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농민들 가슴을 태우고 있는 가뭄 해결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이 던진 이 독기 어린 거부권에 가로막혔습니다. 다행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셔서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 존엄을 다시금 세우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비틀린 관계를 바로잡는 그런 날입니다. 국민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시는데,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국민의 뜻을 버리는 매우 비겁한 그런 배신행위가 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표결에 불참해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다수당의 횡포이십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김무성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포함해서 95명의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찬성 표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의회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공당으로서 책임정치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은 예의와 염치도 없어 보입니다. 배제와 패권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능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피아로 대표되는 폐쇄적 관료사회 병폐를 바로잡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령 등 시행령,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지난 98년 안상수 당시 의원, 그리고 당시 박근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일명 박근혜 법안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관피아들이 공직자윤리법에 그리고 그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구멍을 송송 내서 밥그릇 챙기기 했습니다. 바로 이런 법률 일탈행위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은 한참 번지수를 잘못 비껴가신 겁니다. 한마디로 자가당착, 이율배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관피아 편에 서 계십니까? 왜 패권정치 하시려고 하십니까? 대통령이 서 계셔야 할 곳은 관피아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이고 국회법 개정하자고 하는 국회의 편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국회가 헌법가치를 수호한 날, 입법부의 존엄과 책임을 지킨 날로 기억돼야 합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국회가 백기투항 하는 그런 오욕의 날로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누리당 의원님들, 재의결 꼭 참여해 주십시오.

지난번과 같이 찬성 표결에 저희와 함께 뜻 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종료되었으니 국무총리께서는 돌아가셔서 국정을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의 경우에 헌법 제53조제4항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9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동원 의원, 이개호 의원, 장하나 의원, 진선미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감표위원으로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국장 장대섭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의원 단상에서 — 가만있어, 가만있어. 의장님, 감표위원이 왜 야당 의원만 있습니까?)

○의장 정의화 지금 여당 의원이 감표위원을 수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단상에서 — 그러면 절대로 이 투표 할 수 없습니다.)

왜?

(○이종걸 의원 단상에서 — 적법한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정해 주십시오. 여당 의원을 지정해 주십시오.)

국장, 잠깐 들어가 있어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잠깐 좀 보시지요.

(의장, 유승민 원내대표와 협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내수석,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여당 명단을 가능하면 좀 주시고. 원내대표님, 의견 존중할 테니까 그리 아시고 협의하세요.

(「미리 그것도 합의 안 하고 뭐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 및 조해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협의 후 하단)

그 명단을 좀 주십시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다시 지명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황인자 의원, 강동원 의원, 장하나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기기 우측 상단에 출력된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종료될 것입니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5시41분 투표개시)

○**의장 정의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투표가 시작된 지 15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일흔일곱 분밖에 투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국회의원들이 전자 무기명투표를 하면

대개 한 30여 분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표가 시작된 지 30분이 되었는데 아직 구십여 분만 투표를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로 투표를 끝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투표 종료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지도 않고 종료를 해 달라고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새누리당 투표 안 하면 12시까지 기다리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의원님들, 속이 좀 상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지킵시다. 이렇게 되면 여당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과반수 여당이 국회를 이렇게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결하셔도 좋습니다.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투표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의사를 모으는 행위는, 이것은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분도 빠짐 없이 투표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가셔서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투표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투표를 하셔야지요! 아니, 국회를 이끌어 가시는 여당, 다수당, 과반수 정당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 집단파업 아닙니까, 이거! 어떤 분은 반대, 어떤 분은 찬성, 어떤 분은 기권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안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파업입니다, 파업! 여러분들이 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 얼마나 욱하셨어요?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국민 앞에 부당한 불법파업 하시면 국회 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투표에 참여 안 하는 것도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찬성 안 하고, 어떤 분은 반대하고, 어떤 분은 무효 하고, 어떤 분은 기권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춘석 의원 단하에서 — 여당이 투표에 참여 안 하는 것은 세상에 나는 처음 봤네.)

(장내 소란)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이것은 부당한 파업입니다, 부당한 파업. 이렇게 집단적으로 똑같은 의사를 가지실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이 역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다원화된 의사가 보장되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셨던 여당 의원님들께서 일사불란한 집단적 행동으로 국민들을……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아니, 자유투표 아닌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어떤 분은 반대하고 어떤 분은 찬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투표하세요, 여당 의원님들」 하는 의원 있음)

(「야당부터 하세요, 야당부터」 하는 의원 있음)

(「다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놀랐습니다, 정말 오늘.)

(「아니, 여기 와서 언성을 높이면 안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세요. 투표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어떻게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여당 의원분들께서 위에서 한마디 한다고 이렇게 완전히 숨죽인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속으로 반대하실 분은 반대하십시오. 찬성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이 말씀 듣는 게 괴롭습니까, 여러분?)

(「괴롭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괴로우면…… 이해합니다. 이제오 선배님, 그냥 둘러싸이셔 가지고 지금 투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시작한 지 지금 46분이 경과했습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분 내로 모두 투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은 안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시간을 두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듣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저희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조금 더 노력해 보십시오.

(「의장님, 여당 의원님들한테 투표 독려를 좀 해 주세요, 5분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제가 상황을 봐서는 의장이 독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의장님이 투표 독려를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 의원님들 설득을 좀 하시지요. 기다릴게요.

(「이것은 자유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그냥 기권하는 것은 맞지만, 집단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이것은 저기가 무슨 보초를 세워 놔서요. 안 보이는 투명인간 보초를 세워 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의장께서 5분 동안을 예고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5분만 참아 보십시오. 만약에 5분 이후에도 계속 저러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스스로 목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님이 한 명 한 명 다 호명을 해 봐요, 투표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김희국 의원님, 투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한 명 한 명씩 확인을 해 봐야겠어요, 우리가. 그래야지 의장님이 진행을 종료할지 안 할지 판단할 것 아니야. 우리가 한 명씩 물어볼 테니까 본인 의사를 분명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여당 의원한테 야당 의원이 그리 얘기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투표하고 안 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 하는 의원 있음)

(「자,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거기는 잠깐 있고요.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잖아」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여당 의원한테 투표를 하니 안 하니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왜 국회법에 안 되게 되어 있어?」 하는 의

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5분 있다가 투표를 안 하면 저희가 의원 한 분씩 한 분씩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몇 명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약속한 5분이 다 경과됐습니다마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단께서 각별히 시간을 조금 더 달라 그러시는데요. 제가 지금 4시 27분인데 4시 30분에 투표를 종결할 테니까 그때까지 투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의장님, 저희들 더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그런데 지금 봐서는 상황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투표 독려를 해 주세요, 의장님. 마감 시간만 고지할 게 아니고 투표 독려를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참담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투표 종결은 의장이 그냥 선언하면 됩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한 10분여간 더 여유를 달라는 말씀이 계속기 때문에 제가 존중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런 상황은 사실 굉장한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참아 주시기 바라구요. 그때까지 투표를 꼭 완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감시키세요, 한두 번 봐줘야지」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단상에서 —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춘석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강석호 의원님!)

(피켓을 들어 올리며 「투표하세요」 하는 의원들 있음)

(○이춘석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강창희 의원님!)

(피켓을 들어 올리며 「투표하세요」 하는 의원들 있음)

(○이춘석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경대수

의원님!)

(피켓을 들어 올리며 「투표하세요」 하는 의원들 있음)

(장내 소란)

저기, 이춘석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투표를 시작한 지 54분이 경과했습니다. 제가 야당의 요청을 존중해서 투표 시간을 좀 지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노철래 의원님!)

(피켓을 들어 올리며 「투표하세요」 하는 의원들 있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을 의결하려면 우선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진 55분간의 투표 시간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 투표소저 상단의 명패수를 보면 128인에 그쳐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더 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걸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아직 투표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 투표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16시36분 투표불성립 선포)

(장내 소란)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아직 투표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더 이상 가 봐야 요란만 하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세요, 정회」 하는 의원 있음)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지금 투표하러 가잖아요, 의장님! 지금 투표하러 가잖아요. 왜 투표권 안 주는 거예요! 왜 투표권 안 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정청래 의원, 내가 오늘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제가 충분히 투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종걸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이 있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장으로서 10분을 더 보태서……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투표권을 방해하는 의장님이 어디 있어요!)

40분 이내에 의총을 끝내고 제2항부터 의결에 참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왜 투표권을 안 줘요!)

정확하게 지금부터 40분 후에 본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오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장과의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아니, 10분간 더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2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새누리당 의원님들만 단독으로 본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난 7월 1일 의사일정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오늘로 연기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회법 재의의 건이 투표불성립 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30~40분간의 정회를 요청하였고, 그러면서 의원총회 후에 본회의에 꼭 참석하여 나머지 안건을 표결처리하겠다고 약속을 저에게 하였기 때문에 제가 신의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본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2~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

으로 다음으로 처리를 연기하겠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오늘의 일정인 주요 민생법안을 포함한 61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진행의 건

(21시39분)

○의장 정의화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의원 의원님들 오늘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쳐 드리고 힘들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에서 송부되어 온 국회법 재의안이 이렇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마다 개별적으로 견해와 소감이, 소회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당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참고하고 고민하고 감안한 바탕 위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한 가운데서 약속을 한,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개의가 된 본회의입니다.

저희 의원님들 가운데서는 지난 6월 25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그 결론에 충실하자면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진행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야당과의 협의 가운데서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일단 의사일정 진행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저희 당이 협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안설명이나 또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와 응답 순서, 야당 의원 세 분의 질의응답 순서 그리고 반대토론, 야당 의원 세 분의 반대토론까지 저희가 경청했고 또 저희 의원님들 가운데서 이정현 의원님께서 대표로 우리 당의 입장을 여기 앞에 나와서 개진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 여당으로서 의사일정에 협조하는 것이 야당과 합의된 사항이고 야당은 그렇게 해 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의사일정, 특히 61개의 경제활성화·민생 법안, 서민경제 안정 관련된 법안들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진행방법까지 서로 협의된

바에 따라서 저희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의원님까지 세 분을 선정을 해서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가 의원총회 때 보고 말씀 드릴 때 혹여라도 노파심에 야당이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의총을 한다고 나갔을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 그것이 유일하게 걱정되는 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변수가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야당이 모든 과정을 협의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배려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행을 했는데 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 원내 지도부는 개별적으로는 찾아와서 조금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 표명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법안 처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협의하고 합의하고 의장님께서도 그 합의 과정에서 추인을 하셨던 내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야당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당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야당이 추후에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남은 추후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 야당이 충실하게 협력함으로써 그것을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이상 4건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고 제6항부터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이개호·부좌현·홍의락·박남춘·주승용·김기준·이목희·박민수·강기정 의원 발의)

-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1시46분)

○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신동우 의원 나오셔서 이상 1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신동우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 출신 정무위원회 신동우 의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대부분 경제활성화와 민생에 관련된 법률안들로서 여야가 심도 있게 심의하고 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0인, 기권 3인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35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0인, 기권 3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최봉홍·권은희·이명수·이한성·이노근·윤명

희·이상일·조명철·김태환 의원 발의)

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승남·윤후덕·배재정·박기춘·전정희·배기운·진성준·이윤석·김광진 의원 발의)

(21시5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7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강석훈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강석훈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고보조금 운영의 세부내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강화하자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강석훈 의원, 투표하셨습니까?

(○강석훈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투표를 끝내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36인, 반대 9인, 기권 7인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이개호·유대운·정청래·부좌현·김성곤·우원식·최민희·박민수·김기준·김광진·전해철 의원 발의)

2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승남·강동원·진성준·이찬열·박민수·송영근·김현미·윤후덕·백군기·김광진 의원 발의)

(21시58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9항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홍철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홍철호** 국방위원회 홍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저희 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홍철호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48인, 기권 5인으로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김종태·장윤석·황인자·박명재·서상기·홍지만·윤재옥·강은희·이완영·권은희 의원 발의)

2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최규성·강기정·김영록·부좌현·주승용·유성엽·박민수·김성곤·전해철 의원 발의)

2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이개호·정청래·이목희·박남춘·김광진·조정식·박민수·정호준·강기정 의원 발의)

2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부좌현·박주선·정성호·박민수·김영록·김광진·강기정·박남춘·진선미·김우남 의원 발의)

2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 발의)(안효대·강석호·이철우·이노근·염동열·박인숙·김용태·신의진·김재경·이재영·윤진식·김정록 의원 발의)

2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2시01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21항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이철우** 이철우 의원입니다.

7건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는데, 그중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입니다. 이걸 제가 발의한 법인데 새마을사업 등으로 소규모 교량·하천 이런 데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이철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3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지금 147, 이제 9인 되었는데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04인, 반대 15인, 기권 31인으로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우남·이윤석·김영환·강기정·강창일·최규성·김성곤·김광진 의원 발의)

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2시0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8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황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황인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0인, 기권 2인으로서 보

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40인, 반대 6인, 기권 5인으로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4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헌승 의원, 문제 있어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김광진·박기춘·윤호중·정세균·한명숙·이미경·강동원·설훈·김윤덕·김영주·안규백·김관영·진선미 의원 발의)

37.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2시1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5항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정용기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 소속 정용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8인, 기권 2인으로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9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회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회 제출)

4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회 제출)

4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회 제출)

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회 제출)

46.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회 제출)

(22시22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41항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김장실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장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장실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좌석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김장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32인, 반대 2인, 기권 18

인으로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두 분이 투표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42인, 기권 9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44인, 기권 8인으로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47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 발의)(경대수·안홍준·이한성·김우남·유의동·김재원·조원진·이인제·최규성·문정림 의원 발의)

4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안홍준·김승남·이한성·박민수·김종태·유의동·조원진·이인제·문정림 의원 발의)

4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노철래·송영근·이만우·강기윤·강은희·강석훈·김광립·박명재·정우택·황주홍 의원 발의)

5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이운룡·유의동·조명철·류성걸·유일호·박대동·이강후·김상민·김동완·강길부·신성범·정갑윤 의원 발의)

5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시2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47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대수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경대수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운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0인 중 찬성 144인, 기권 6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김상훈·김승남·김종태·박윤옥·박인숙·서청원·송영근·이노근·전순옥 의원 발의)

54.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김상훈·김승남·김종태·박윤옥·박인숙·서청원·송영근·이노근·전순옥 의원 발의)

5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6.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시33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5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53항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長代理 尹明熙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49인, 기권 2인으로서 의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48인, 기권 4인으로서 신

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황영철·김중대·송영근·홍철호·주영순·최봉홍·권성동·배덕광·문대성 의원 발의)

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시37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57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김용남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용남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그중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 중에 최초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입니다. 부디 환노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김용남 의원 축하합니다.

그러면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50인, 기권 2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인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문병호·이윤석·박민수·주승용·이개호·조경태·노영민·박주선·변재일 의원 발의)

65.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나성린·이노근·김성태·박민식·김태원·박대동·신경림·문대성·함진규 의원 발의)

6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2시40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0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국가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4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노근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이노근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이 있습니다. 이 7건을 다 설명드리지 않고 단말기 내용을 참조하시고, 이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이노근 의원님, 여야 전원 만장일치가 맞습니까?

그러면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중 찬성 15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2인 중 찬성 150인, 기권 2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3인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8인, 기권 4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앉아 계세요, 이완영 의원. 곧 끝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8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22시46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욱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문현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갑윤	정두언	정문현	정미경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일표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인자	황진하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하태경				강석훈 민병주 홍문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강석훈 김종훈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한기호	한선교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반대 의원(7인)
박덕흠 이장우 이종진 이현승
조명철 함진규 홍문종

기권 의원(10인)
강기윤 김제식 김한표 김희정
류지영 민병주 박창식 염동열
이에리사 하태경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35인)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문대성	문정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재중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병석	윤영석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황인자	황진하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기권 의원(3인)

김용남 유일호 이명수

(경대수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53인, 기권 의원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립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립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흙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흙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중 진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기권 의원(1인)			
황 진 하				김 희 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중 태	김 중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나 성 름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중 태	김 중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름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영석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반대 의원(1인)
 박덕흠
기권 의원(1인)
 강기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완영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장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36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문대성 문정림
 민현주 박대동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반대 의원(9인)

권성동 김한표 박덕흠 윤명희
 이노근 이종진 이현승 함진규
 홍문종

기권 의원(7인)

김제식 류지영 민병주 박대출
 신의진 염동열 이현재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강기윤 이현승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48인)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병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5인)

강 기 윤 김 종 태 이 명 수 이 재 오
 이 현 승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립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립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이현승			
기권 의원(8인)			
강기윤	강석훈	권은희	김한표
김현숙	민병주	박덕흠	이에리사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3인)

강길부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박 맹 우

이 장 우	이 중 진	이 현 승	정 갑 윤
한 기 호	한 선 교	홍 문 중	

기권 의원(30인)

권 은 희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명 연
김 용 남	김 을 동	김 정 록	김 제 식
김 중 훈	김 현 숙	류 성 결	류 지 영
민 병 주	박 상 은	박 창 식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의 진	염 동 열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운 룡
이 현 재	정 문 헌	정 우 택	정 희 수
조 명 철	하 태 경		

(심재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05인, 기권 의원 30인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05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길 정 우
김 광 립	김 동 완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세 연	김 용 태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정 훈	김 중 태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희 선	김 희 국	나 성 립
노 철 래	문 대 성	문 정 립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신 상 진
신 성 범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장 윤 석
전 하 진	정 두 언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의 화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반대 의원(15인)

김 재 원	김 태 흠	김 한 표	박 대 출
박 덕 흠	손 인 춘	여 상 규	이 우 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중 태	김 중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희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립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른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0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학재 이한성 이채익 이현승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 문 헌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신 동 우 홍 문 중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립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중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재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문 헌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미 경	정 병 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0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태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립	노 철 래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중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반대 의원(6인)
 권성동 김용남 류성걸 양창영
 조명철 홍문중
기권 의원(5인)
 김을동 민병주 서용교 유일호
 이현승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중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주영순
기권 의원(2인)
 강석훈 이채익
 (이현승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49인, 기권 의원 2인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9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진영	최경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채익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현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권 성 동 주 영 순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김 용 남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중 태
 김 중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강 기 윤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중 태
 김 중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김장실 이완영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8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강석훈 김중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중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정갑윤 정병국
 정두언 정문현 정미경 정의화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조해진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하태경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박 상 은

(김재경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52인, 기권 의원 1인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린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윤 명 희

함 진 규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박 상 은 이 명 수 홍 철 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9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중 태	김 중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름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중 태	김 중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성 름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중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정용기 조원진 주영순 최경환
 한기호 홍문중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32인)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노철래	류성결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립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병석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전하진	정두언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해진
진영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반대 의원(2인)

김재원 이철우

기권 의원(18인)

강기윤	김성찬	김희정	류지영
심윤조	심재철	이명수	이상일
이에리사	장윤석	정갑윤	정문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2인)

강기윤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세연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민식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립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현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함진규	홍문중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기권 의원(9인)

권성동	김성태	김용남	김현숙
-----	-----	-----	-----

박명재 박상은 심윤조 여상규
한선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4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기권 의원(8인)

김현숙	박상은	서용교	염동열
이에리사	이채익	홍문종	홍철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7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김용남

기권 의원(4인)

권성동 김도읍 유일호 주영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43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동완 김상훈 김용태 김재원 김중태 김태호 김한표 김희정 류지영 민현주 박명재 박윤옥 서용교 신경림 심윤조 안효대 오신환 유승우 윤상현 이노근 이상일 이이재 이재영 이종진 이채익 이현승 정갑윤 정수성 정희수 주영순 한선교 홍일표 황우여
 길정우 김명연 김성찬 김을동 김정록 김중훈 김태환 김현숙 나성린 문대성 박대동 박민식 박인숙 서청원 신동우 심학봉 양창영 원유철 유의동 윤영석 이만우 이완영 이인제 이재오 이철우 이현재 정문헌 정용기 조명철 최경환 함진규 홍지만 황인자
 김광림 김무성 김성태 김장실 김정훈 김진태 김태흠 김희선 노철래 문정림 박대출 박상은 박창식 손인춘 신상진 안상수 유기준 유일호 이강후 이명수 이우현 이자스민 이정현 이주영 이학재 장윤석 정미경 정우택 조원진 하태경 홍문종 홍철호 황진하
 김기선 김상민 김세연 김재경 김제식 김태원 김학용 김희국 류성걸 민병주 박덕흠 박성호 서상기 송영근 신성범 안홍준 염동열 유승민 유재중 이균현 이병석 이운룡 이장우 이종배 이진복 이한성 전하진 정병국 정의화 조해진 한기호 홍문표 황영철

기권 의원(7인)

김도읍 김용남 박맹우 신의진
 심재철 이에리사 진영
 (심재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43인, 기권 의원 7인임)

권은희 김도읍 김상민 김세연 김장실 김정훈 김진태 김학용 김희국 류성걸 민병주 박맹우 박성호 배덕광 서상기 손인춘 신상진 심재철 안효대 오신환 유승우 윤명희 이균현 이병석 이우현 이자스민 이정현 이주영 이학재 장윤석 정문헌 정용기 조명철 진영 한선교 홍일표 황우여
 김광림 김명연 김성찬 김용태 김재원 김중태 김태호 김현숙 나성린 문대성 박대동 박민식 박인숙 서용교 신경림 신의진 안상수 염동열 유기준 유일호 윤영석 이만우 이에리사 이재영 이종진 이채익 이현승 정갑윤 정병국 정의화 조해진 하태경 홍문종 홍철호 황진하

기권 의원(1인)

박덕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이채익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반대 의원(1인)

안홍준

기권 의원(2인)

이명수 주영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9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도읍 김상민 김세연 김장실 김정훈 김진태 김태흠 김희선 노철래 문정립 박대출 박민식 박인숙 서청원 신동우 심윤조 안효대 오신환 유승우 윤명희 이균현 이병석 이우현 이자스민 이정현 이주영 이학재 장윤석 정문헌 정용기 조명철 하태경 홍문종 홍철호 황진하

길정우 김동완 김상훈 김용남 김재경 김제식 김태원 김학용 김희국 류성결 민병주 박덕흠 박상은 박창식 손인춘 신상진 심재철 양창영 원유철 유의동 윤상현 이노근 이상일 이운룡 이장우 이종배 이진복 이한성 진하진 정미경 정우택 조원진 한기호 홍문표 황영철

김광림 김명연 김성찬 김용태 김재원 김중태 김태호 김한표 김희정 류지영 민현주 박맹우 박성호 서상기 송영근 신성범 심학봉 여상규 유기준 유일호 윤영석 이만우 이에리사 이재영 이채익 정갑윤 정병국 정의화 조해진 한선교 홍일표 황우여

김기선 김무성 김성태 김을동 김정록 김중훈 김태환 김현숙 나성린 문대성 박대동 박명재 박윤옥 서용교 신경림 신의진 안상수 염동열 유승민 이재중 이강후 이명수 이완영 이인제 이재오 이종훈 이철우 이현재 정두언 정수성 정희수 최경환 함진규 홍지만 황인자

권은희 김도읍 김상민 김세연 김장실 김정훈 김진태 김태흠 김희선 노철래 문정립 박대출 박민식 박인숙 서용교 신경림 신의진 안상수 염동열 유기준 유일호 윤영석 이만우 이에리사 이재영 이종진 이채익 이현승 정갑윤 정병국 정의화 조해진 하태경 홍문종 황영철

길정우 김동완 김상훈 김용남 김재경 김제식 김태원 김학용 김희국 류성결 민병주 박덕흠 박상은 박창식 손인춘 신상진 심재철 안홍준 염동열 오신환 유승민 윤명희 이균현 이병석 이우현 이자스민 이정현 이주영 이학재 장윤석 정문헌 정용기 조명철 주영순 진영 한선교 홍문표 황우여

김광림 김명연 김성찬 김용태 김재원 김중태 김태호 김한표 김희정 류지영 민현주 박맹우 박성호 배덕광 서상기 송영근 신성범 심학봉 양창영 원유철 유의동 윤상현 이노근 이상일 이운룡 이장우 이종배 이진복 이한성 진하진 정미경 정우택 조원진 최경환 함진규 홍지만 황인자

김기선 김무성 김성태 김을동 김정록 김중훈 김태환 김현숙 나성린 문대성 박대동 박명재 박윤옥 서상기 송영근 신성범 심학봉 안상수 염동열 유승민 이재중 이강후 이명수 이완영 이인제 이재오 이종훈 이철우 이현재 정두언 정수성 정희수 최경환 함진규 홍지만 황인자

기권 의원(2인)

주영순 진영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49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재식 김재원 김정훈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완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종훈 이주영 이철우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황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기권 의원(2인)

이채익 진영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립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재원 김정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완영 이인제 이재영 이재오 이종훈 이주영 이철우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황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기권 의원(2인)

이에리사 진영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립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중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기권 의원(2인)

문정림 주영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8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전하진	정갑윤	정병국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중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김종태 장윤석 정갑윤 조원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0인)

찬성 의원(150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회 정 나 성 린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함 진 규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의 화
 정 수 성 조 명 철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홍 일 표 홍 지 만 홍 문 표 홍 일 표
 황 인 자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민 병 주 조 원 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중 태 김 중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회 정 나 성 린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중 태 김 중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회 정 나 성 린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박 인 숙	박 창 식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군 현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회 수	조 명 철	정 회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한 기 호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박 상 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1인)

찬성 의원(151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진 태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흠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회 선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회 정	나 성 립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0인)

장 기 윤	장 길 부	장 석 호	장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회 정	나 성 립	노 철 래
류 성 결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운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김종훈 류지영

심운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1인)

김종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3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태환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문정림 민병주 박대동 박대출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심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현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에리사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현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김현숙 이상일 이완영 황영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8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용남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반대 의원(2인)
김재원 한선교

기권 의원(2인)
박맹우 여상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48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출석 의원(28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원유철 원혜영
 우원식 우윤근 원유대운 유성엽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은혜
 유승민 유승우 유일호 유재중
 유의동 유인태 유상현 윤영석
 윤관석 윤명희 윤후덕 은수미
 윤호중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명수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결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현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정식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진선미 진성준 진승용 주영순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천정배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민희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최재천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25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원유철 원혜영
 우원식 우윤근 원유대운 유성엽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호중 이균현
 은수미 이노근 이만우 이병석
 이석현 이우현 이이재 이장우
 이종결 이주영 이철우 이한성
 인재근 장윤석 장정희 정두언
 정성호 정우택 정호준 조원진
 조영순 천정배 최민희 최재천
 한명숙 홍문종 홍익표 이노근
 이명수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순 욱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진 성 준 진 영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홍 황 진 하

○속개 시 재석 의원(152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을 동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회 정 나 성 립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회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장 윤 석 전 하 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진 영 최 경 환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산회 시 재석 의원(152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회 정 나 성 립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원 유 철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회 윤 상 현 윤 영 석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이 재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진영	최경환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청가 의원(4인)

김영우 송광호 윤재옥 주호영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형준
의사국장 장대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정중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환경부장관 윤성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출석 정부위원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금융위원장 임종룡

【보고사항】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교육문화체육관광	설훈	새정치	2015.
산업통상자원	김동철	민주연합	7. 6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특별	강창일(안) 민홍철(국토) 박기춘(국토) 안민석(교) 이인영(환) 정성호(국토) 홍의락(미) 홍익표(산)	새정치 민주연합	2015. 6. 29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특별	김성태	새누리당	2015. 7. 1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윤리특별	홍일표	새누리당	2015. 7. 6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여성가족	·	김제남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	2015. 6. 29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이이재	정두언	새누리당	2015. 7. 2
산업통상자원	정두언	이이재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정두언	이이재	새누리당	2015. 7. 3
산업통상자원	이이재	정두언		

○의안 제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6. 25 부좌현·황주홍·이개호·조정식·박홍근·김우남·박남춘·민홍철·노영민·이원욱 의원 발의)

6월 26일 기획재정부위원회에 회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5. 6. 25 장하나·김광진·김기식·박홍근·유승희·은수미·이개호·이원욱·정청래·최원식·최재성·황주홍 의원 발의)

6월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6. 25 부좌현·황주홍·이개호·조정식·박홍근·김우남·박남춘·민홍철·노영민·이원욱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

(2015. 6. 25 홍지만·송영근·이채익·이우현·이완영·김명연·박성호·정수성·이진복·강석훈·박명재·조경태·김상훈·서용교·강석호·김희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2015. 6. 25 정진후·김제남·서기호·박원석·심상정·김승남·우원식·이목희·유기홍·신학용·홍문표·도종환·백근기·김태년·박광운·신상진·이종배·최민희·이종훈·강동원·부좌현·박남춘·이찬열·배재정·강창일·김상희·김광진·박홍근·최재성·

우상호 · 이미경 · 김현 · 박혜자 · 추미애 · 최원식 · 이원욱 · 유인태 · 박윤옥 · 박주선 · 노영민 · 김용익 · 노웅래 · 조정식 · 김성곤 · 안민석 · 신성범 · 인재근 · 정청래 · 이춘석 · 이명수 · 김현미 · 이주영 · 유은혜 · 윤관석 · 서용교 · 이학영 · 안규백 · 김성찬 · 이상직 · 민홍철 · 강기정 · 유성엽 · 심재권 · 유대운 · 오영식 · 원혜영 · 이석현 · 김동철 · 설훈 의원 발의)

6월 29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5. 6. 25 김태원 · 이만우 · 이한성 · 조명철 · 나경원 · 강기윤 · 박성호 · 심재철 · 이노근 · 김재원 의원 발의)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5. 6. 25 김상희 · 이목희 · 홍의락 · 유인태 · 신정훈 · 박홍근 · 김태년 · 유대운 · 박수현 · 도종환 · 전순옥 · 전정희 · 은수미 · 박범계 · 한명숙 · 김현 · 이미경 · 김성곤 의원 발의)

6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김성곤 · 조정식 · 이개호 · 황주홍 · 부좌현 · 이찬열 · 임내현 · 김영환 · 강창일 · 유승희 · 전순옥 · 최규성 · 추미애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별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박주선 · 진성준 · 박홍근 · 조정식 · 정진후 · 민홍철 · 임수경 · 김영록 · 장하나 · 최규성 · 박혜자 · 안민석 · 김동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박주선 · 진성준 · 박홍근 · 조정식 · 정진후 · 임수경 · 김영록 · 장하나 · 최규성 · 박혜자 · 안민석 · 김동철 의원 발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박주선 · 진성준 · 박홍근 · 조정식 · 정진후 · 민홍철 · 임수경 · 김영록 · 장하나 · 최규성 · 박혜자 · 안민석 · 김동철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이원욱 · 이개호 · 황주홍 · 부좌현 · 배재정 · 김광진 · 박홍근 · 유승희 · 민홍철 · 최재성 · 전해철 의원 발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이원욱 · 황주홍 · 정청래 · 홍익표 · 박민수 · 강창일 · 이개호 · 신경민 · 박남춘 · 김광진 · 박홍근 · 유승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남인순 · 배재정 · 홍익표 · 전병헌 · 장하나 · 이목희 · 김기식 · 김상희 · 이미경 · 황주홍 · 안민석 의원 발의)

6월 2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이노근 · 정희수 · 김태원 · 김희국 · 박성호 · 이완영 · 이장우 · 안효대 · 박윤옥 · 윤명희 · 함진규 의원 발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이명수 · 정희수 · 김을동 · 박윤옥 · 이종진 · 김기선 · 신경림 · 윤영석 · 김정록 · 이노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9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이종배 · 박맹우 · 이완영 · 한선교 · 이한성 · 경대수 · 황주홍 · 강기윤 · 양창영 · 이강후 · 이자스민 · 정용기 · 박민수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부좌현 · 이개호 · 진성준 · 배재정 · 조정식 · 민홍철 · 황주홍 · 전병헌 · 이원욱 · 박남춘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부좌현 · 이개호 · 진성준 · 배재정 · 조정식 · 민홍철 · 황주홍 · 전병헌 · 이원욱 · 박남춘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최봉홍 · 양창영 · 김성태 · 박창식 · 주영순 · 강길부 · 신경림 · 유승우 · 황인자 · 김세연 · 박윤옥 · 김재원 · 이상일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김재원 · 김태원 · 황인자 · 류지영 · 김제식 · 오신환 · 경대수 · 정희수 · 강기윤 · 김한표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전순옥·홍익표·이원욱·민홍철·강동원·신기남·백재현·김용태·전정희·노웅래·신정훈·조경태·홍영표 의원 발의)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김영록·유성엽·박지원·추미애·강동원·김우남·김성곤·민홍철·홍중학·우윤근 의원 발의)

6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2015. 6. 26 손인춘·송영근·이현재·백근기·정희수·김을동·이노근·강기윤·홍철호·이자스민 의원 발의)

6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전해철·박남춘·정청래·신경민·황주홍·최동익·윤관석·이목희·민홍철·우윤근·박수현·김성곤·신기남·이해찬·김우남·김광진·이춘석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이찬열·박홍근·안규백·이목희·최규성·박지원·이개호·김성곤·주승용·김상희·전순옥·김경협·이종걸·김춘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3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배재정·홍익표·백재현·이목희·안규백·이개호·김태년·부좌현·김상희·정진후·정청래·황주홍·남인순·오영식·최민희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김을동·손인춘·이명수·김도읍·윤재욱·이운룡·나성린·신동우·송영근·김재원·오신환·이노근·주영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30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홍익표·배재정·윤관석·박완주·박주선·박홍근·임수경·김용익·이원욱·김영록 의원 발의)

6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류지영·유의동·신경림·강기윤·송영근·김재경·김광림·배덕광·문대성·박대동·권성동 의원 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류지영·유의동·신경림·강기윤·송영근·김재경·김광림·배덕광·문대성·박대동·권성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양창영·황주홍·송영근·민홍철·김태원·최봉홍·강기윤·김성태·이한성·김종태·이자스민 의원 발의)

6월 3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양창영·류지영·이종배·최봉홍·박창식·권성동·김종태·김태환·이한성·강기윤·이정현·서용교·이자스민·이에리사·이종진·황영철 의원 발의)

6월 30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황주홍·박홍근·김춘진·김광진·전병헌·오제세·이학영·김우남·부좌현·이개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나성린·황주홍·박민수·이한성·김광림·주영순·서용교·강석호·안홍준·김을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30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한기호·김기선·황영철·정문헌·김성찬·김용태·송영근·염동열·안규백·홍철호 의원 발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5. 6. 29 정부 제출)

이상 3건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김춘진·강창일·김성곤·장병완·윤관석·김영록·김우남·민홍철·인재근·황주홍 의원 발의)

6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나성린·김광진·이한성·김광림·주영순·서용교·강석호·안홍준·김을동·홍지만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홍익표·배재정·윤관석·박완주·박주선·김성곤·박홍근·임수경·김용익·이원욱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홍익표·배재정·윤관석·박완주·박주선·김성곤·박홍근·임수경·김용익·이원욱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김상희·최규성·주승용·이원욱·이찬열·진성준·박광온·이인영·이미경·박주선·유성엽·배재정·김경협 의원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우원식·황주홍·정청래·김승남·이종훈·오영식·이개호·부좌현·인재근·홍영표·김성곤·주승용·이목희·민홍철·김광진·진병현·김상희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김태원·황주홍·이만우·강동원·이우현·김제식·심학봉·김도읍·이현승·하태경·김희국·이장우·심재철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5. 6. 29 홍익표·배재정·윤관석·박완주·박주선·박홍근·임수경·김용익·이원욱·김영록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박광온·김현미·최재성·박범계·

홍종학·김영록·오제세·김관영·윤호중·이춘석·박영선 의원 발의)

7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주승용·이개호·김성곤·변재일·조정식·이윤석·최규성·강창일·진성준·김현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5. 6. 30 정부 제출)

**이상 3건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이학영·이목희·최민희·유승희·도중환·황주홍·김태년·김기식·이춘석·진선미 의원 발의)

7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조명철·송영근·신성범·이자스민·박맹우·문정림·정희수·이만우·류성걸·이주영·김용남 의원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박광온·김현미·최재성·박범계·홍종학·김영록·오제세·김관영·윤호중·이춘석·박영선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박광온·김현미·최재성·박범계·홍종학·김영록·오제세·김관영·윤호중·이춘석·박영선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이재영·김을동·정용기·홍철호·이채익·배덕광·이강후·이종진·신성범·이상일·민현주·김제식 의원 발의)

201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건 2015. 6. 30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이상 3건 7월 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문대성·황인자·권성동·원유철·문정림·한기호·김을동·함진규·김태원·

류지영 · 이한구 · 홍철호 · 김도읍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

(2015. 6. 30 한선교 · 정진후 · 이한성 · 배덕광 ·
 염동열 · 심학봉 · 이우현 · 윤재옥 · 김종태 ·
 김태원 · 이종훈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한선교 · 정진후 · 이한성 · 배덕광 ·
 염동열 · 심학봉 · 이우현 · 윤재옥 · 김종태 ·
 김태원 · 이종훈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김태년 · 김광진 · 도종환 · 박광온 ·
 박홍근 · 배재정 · 부좌현 · 이개호 · 전병헌 ·
 정세균 · 정진후 · 정청래 · 최동익 · 최민희 ·
 최재성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2015. 6. 30 김태년 · 김광진 · 김우남 · 박홍근 ·
 배재정 · 부좌현 · 이개호 · 이학영 · 전병헌 ·
 정세균 · 정진후 · 정청래 · 최민희 · 최재성 ·
 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5건 7월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송영근 · 주호영 · 이주영 · 이정현 ·
 이우현 · 박윤옥 · 이노근 · 홍철호 · 김성찬 ·
 한기호 의원 발의)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2015. 6. 30 정부 제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송영근 · 주호영 · 이주영 · 이정현 ·
 이우현 · 박윤옥 · 이노근 · 홍철호 · 김성찬 ·
 한기호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송영근 · 주호영 · 이주영 · 이정현 ·
 이우현 · 박윤옥 · 이노근 · 홍철호 · 김성찬 ·
 한기호 · 최봉홍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주승용 · 이개호 · 김성곤 · 변재일 ·
 조정식 · 이윤석 · 최규성 · 강창일 · 진성준 ·
 김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노웅래 · 이개호 · 조정식 · 박홍근 ·
 황주홍 · 부좌현 · 강동원 · 김광진 · 양승조 ·
 정세균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노웅래 · 이개호 · 조정식 · 박홍근 ·
 황주홍 · 백군기 · 부좌현 · 강동원 · 김광진 ·
 양승조 · 정세균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김관영 · 김영록 · 김윤덕 · 김한길 ·
 박광온 · 박기춘 · 신기남 · 안규백 · 이윤석 ·
 전정희 · 주승용 · 최규성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

(2015. 6. 30 한선교 · 정진후 · 이한성 · 배덕광 ·
 염동열 · 심학봉 · 이우현 · 윤재옥 · 김종태 ·
 김태원 · 이종훈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강동원 · 이개호 · 김성곤 · 정성호 ·
 이찬열 · 조정식 · 부좌현 · 유성엽 · 김태년 ·
 이학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7월 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노웅래 · 부좌현 · 이개호 · 조정식 ·
 박민수 · 황주홍 · 최동익 · 김현 · 안규백 ·
 전순옥 의원 발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6. 30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6. 30 정부 제출)

7월 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15. 6. 30 심재철 · 김상민 · 김성태 · 김영우 ·
 김종태 · 박맹우 · 양창영 · 이종배 · 이한성 ·
 정용기 · 한선교 · 홍철호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주승용 · 이개호 · 김성곤 · 변재일 ·
 조정식 · 이윤석 · 최규성 · 강창일 · 진성준 ·
 김현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
 발의)

(2015. 6. 30 송영근·주호영·이주영·이정현·
이우현·박윤옥·이노근·홍철호·김성찬·
한기호 의원 발의)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5. 6. 30 양승조·이찬열·박홍근·박민수·
설훈·배재정·김광진·이학영·김상희·
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주승용·이개호·김성곤·조정식·
이윤석·최규성·강창일·진성준·김현·
김관영 의원 발의)

7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문병호·김관영·김성곤·김현미·
박남춘·신학용·이종걸·정성호·주승용·
최원식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5. 6. 30 김태원·김성찬·문대성·이노근·
이명수·강석호·함진규·문정림·이만우·
이학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노웅래·이개호·조정식·박홍근·
백균기·부좌현·강동원·유승희·양승조·
정세균 의원 발의)

7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박광온·김현미·최재성·박범계·
홍종학·김영록·오제세·김관영·윤호중·
이춘석·박영선 의원 발의)

7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이명수·김기선·김용익·김명연·
정희수·신경림·류지영·김재원·이종진·
김정록·김태원 의원 발의)

7월 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김우남·홍문표·유성엽·김영록·
강창일·최규성·장하나·강기정·이개호·

김종태·황주홍·박민수 의원 발의)

7월 2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인재근·최동익·이개호·이자스민·
박남춘·황주홍·우원식·김승남·최규성·
이인영·이목희·양승조·설훈·강동원·
민병두·민홍철·윤관석·김성곤·송호창·
김춘진·유승희 의원 발의)

**7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인재근·최동익·이개호·이자스민·
박남춘·황주홍·우원식·김승남·최규성·
이인영·설훈·강동원·민병두·민홍철·
윤관석·김성곤·송호창·이목희·김춘진·
양승조·유승희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
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
김성주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
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
김성주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
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
김성주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
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
김성주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
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
김성주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
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
김성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모자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

김성주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양승조·배재정·이찬열·변재일·박홍근·이목희·이학영·박민수·김상희·김성주 의원 발의)

이상 20건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김희국·황주홍·이노근·이종훈·양창영·권은희·조원진·김태원·이한성·이완영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이명수·정희수·김기선·김용익·신경림·류지영·김재원·이종진·김정록·김태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김태년·강기정·김상희·김윤덕·김현미·박범계·배재정·유인태·이찬열·김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김태년·강기정·김상희·김윤덕·김현·김현미·박범계·배재정·유인태·이찬열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5. 7. 1 김태년·김현·김윤덕·이찬열·유인태·김상희·배재정·김현미·박범계·강기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박광온·김현미·최재성·박범계·홍종학·김영록·오제세·김관영·윤호중·이춘석·박영선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이찬열 · 김윤덕 · 주승용 · 최규성 · 전순옥 · 박광운 · 박홍근 · 안민석 · 황주홍 · 변재일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임내현 · 김광진 · 김성곤 · 박남춘 · 신경민 · 은수미 · 이개호 · 장하나 · 전병현 · 정세균 · 정청래 · 최재성 의원 발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강길부 · 강기윤 · 이만우 · 이자스민 · 이운룡 · 박대동 · 박창식 · 이완영 · 최봉홍 · 하태정 · 문정림 의원 발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강길부 · 강기윤 · 이만우 · 이자스민 · 이운룡 · 박대동 · 박창식 · 이완영 · 최봉홍 · 문정림 의원 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강길부 · 강기윤 · 이만우 · 이자스민 · 이운룡 · 박대동 · 박창식 · 이완영 · 최봉홍 · 문정림 의원 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이개호 · 장병완 · 김윤덕 · 도중환 · 이학영 · 정호준 · 조정식 · 김성곤 · 심재권 · 원혜영 · 이찬열 · 부좌현 · 강기정 · 김영록 의원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이개호 · 장병완 · 김윤덕 · 도중환 · 이학영 · 정호준 · 조정식 · 김성곤 · 심재권 · 원혜영 · 이찬열 · 부좌현 · 강기정 · 김영록 의원 발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이개호 · 장병완 · 김윤덕 · 도중환 · 이학영 · 정호준 · 조정식 · 김성곤 · 심재권 · 원혜영 · 이찬열 · 부좌현 · 강기정 · 김영록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이개호 · 장병완 · 김윤덕 · 도중환 ·

이학영 · 정호준 · 조정식 · 김성곤 · 심재권 · 원혜영 · 이찬열 · 부좌현 · 강기정 · 김영록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이개호 · 장병완 · 김윤덕 · 도중환 · 이학영 · 정호준 · 조정식 · 김성곤 · 심재권 · 원혜영 · 이찬열 · 부좌현 · 강기정 · 김영록 의원 발의)

이상 9건 7월 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2건 2015. 7. 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송영근 · 주호영 · 이주영 · 이정현 · 이우현 · 박윤옥 · 이노근 · 홍철호 · 김성찬 · 한기호 · 최봉홍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송영근 · 주호영 · 이주영 · 이정현 · 이우현 · 박윤옥 · 이노근 · 홍철호 · 김성찬 · 한기호 · 최봉홍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박인숙 · 서상기 · 송영근 · 이명수 · 황인자 · 박윤옥 · 양창영 · 민현주 · 김을동 · 이현재 의원 발의)

7월 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황주홍 · 김우남 · 부좌현 · 강창일 · 이개호 · 박지원 · 유성엽 · 박홍근 · 김광진 · 정세균 의원 발의)

7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김종태 · 경대수 · 윤상현 · 윤명희 · 박민수 · 김승남 · 유성엽 · 신정훈 · 서청원 · 김태호 · 안효대 · 김우남 의원 발의)

7월 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인재근 · 이자스민 · 박남춘 · 황주홍 ·

우원식 · 김승남 · 최규성 · 이인영 · 이목희 · 양승조 · 설훈 · 강동원 · 민병두 · 민홍철 · 윤관석 · 최동익 · 김성곤 · 전해철 · 송호창 · 김춘진 · 안규백 · 유승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강동원 · 이개호 · 김성곤 · 유승희 · 김광진 · 이찬열 · 이학영 · 부좌현 · 윤호중 · 박광온 의원 발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송영근 · 주호영 · 이주영 · 이정현 · 이우현 · 박윤옥 · 이노근 · 홍철호 · 김성찬 · 한기호 · 최봉홍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5. 7. 2 김태원 · 이종배 · 이만우 · 이우현 · 김제식 · 심학봉 · 김도읍 · 이현승 · 하태경 · 김희국 · 이장우 의원 발의)

7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5. 7. 3 김민기 · 부좌현 · 이개호 · 황주홍 · 안규백 · 정성호 · 김성곤 · 강동원 · 유승희 · 최동익 · 노웅래 · 정청래 · 박남춘 · 박민수 의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5. 7. 3 신학용 · 이찬열 · 안규백 · 김을동 · 민병두 · 윤관석 · 이상직 · 박남춘 · 이남영 · 이개호 · 이종걸 · 한명숙 · 양승조 · 김현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
(2015. 7. 3 신동우 · 김을동 · 김태원 · 김재경 · 주호영 · 정두언 · 이노근 · 서상기 · 윤재옥 · 이정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垠希 의원 대표발의)
(2015. 7. 3 권垠希 · 송호창 · 임내현 · 진성준 · 최원식 · 이미경 · 김제남 · 심상정 · 신정훈 · 장하나 · 이개호 · 김동철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垠希 의원 대표발의)
(2015. 7. 3 권垠希 · 송호창 · 임내현 · 진성준 · 최원식 · 이미경 · 김제남 · 심상정 · 신정훈 · 장하나 · 이개호 · 김동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자동차경주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7. 3 황주홍 · 유성엽 · 이개호 · 이윤석 · 김광진 · 김성곤 · 박민수 · 박주선 · 문병호 · 부좌현 · 이한성 · 김우남 · 정세균 · 서영교 · 김승남 · 박혜자 · 김영록 · 홍의락 · 신정훈 · 임내현 · 박지원 · 주승용 · 유인태 · 이춘석 · 장병완 · 유은혜 · 박수현 · 김희국 · 홍영표 · 김영환 · 박기춘 · 우윤근 · 전해철 · 조정식 · 김성주 · 노웅래 · 박남춘 · 신기남 · 김윤덕 · 이언주 · 주영순 · 박대출 · 최원식 · 조정대 · 박상은 · 홍문표 · 양창영 · 신동우 · 김정록 · 유승우 · 백군기 · 노영민 · 정용기 의원 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權垠希 의원 대표발의)

(2015. 7. 3 權垠希 · 임내현 · 진성준 · 최원식 · 이미경 · 김제남 · 심상정 · 신정훈 · 장하나 · 이개호 · 김동철 의원 발의)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5. 7.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

(2015. 7. 3 홍지만 · 강은희 · 이완영 · 강석훈 · 이우현 · 권은희 · 이채익 · 김상훈 · 배덕광 · 김희국 의원 발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5. 7. 3 김관영 · 김윤덕 · 박광온 · 박지원 · 유성엽 · 유인태 · 이개호 · 이상직 · 이춘석 · 전정희 · 주승용 · 최규성 의원 발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5. 7. 3 박영선 · 김영록 · 신정훈 · 김기준 · 이학영 · 민병두 · 김현미 · 강동원 · 안민석 · 박범계 의원 발의)

이상 3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2015. 7. 3 양창영 · 박맹우 · 이한성 · 황주홍 · 김기준 · 김종태 · 강기윤 · 이종배 · 민현주 · 황영철 · 최봉홍 의원 발의)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5. 7. 3 하태경·손인춘·함진규·정갑윤·정희수·박민식·강석호·정두연·문대성·강길부·김태원·황영철 의원 발의)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 7. 6 정부 제출)

각 소관 상임위원회(국회운영·법제사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외교통일·정보·여성가족 제외)에 회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통지하겠음

2015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15. 7. 6 정부 제출)

이상 2건 정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 7. 6 정부 제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15. 7. 6 정부 제출)

이상 2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 7. 6 정부 제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5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 2015. 7. 6 정부 제출)

이상 3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 7. 6 정부 제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 7. 6 정부 제출)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설훈) 사임의 건

(2015. 7. 6 설훈 의원 제출)

산업통상자원위원장(김동철) 사임의 건

(2015. 7. 6 김동철 의원 제출)

휴회의 건

(2015. 7. 6 의장 제의)

7월 7일(1일간)

○의안 심사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14. 12. 15 김민기·이개호·부좌현·홍의락·박남춘·주승용·김기준·이목희·박민수·강기정 의원 발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

(2014. 12. 29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정무위원장 보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8 김관영·김승남·윤후덕·배재정·박기춘·전정희·배기운·진성준·이윤석·김광진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7. 1 정희수·최봉홍·권은희·이명수·이한성·이노근·윤명희·이상일·조명철·김태환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5. 3. 6 안규백·김승남·강동원·진성준·이찬열·박민수·송영근·김현미·윤후덕·백군기·김광진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5. 2. 3 박남춘·이개호·유대운·정청래·부좌현·김성곤·우원식·최민희·박민수·김기준·김광진·전해철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국방위원장 보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4. 12. 11 김우남·최규성·강기정·김영록·부좌현·주승용·유성엽·박민수·김성곤·전해철 의원 발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5 김민기·이개호·정청래·이목희·박남춘·김광진·조정식·박민수·정호준·강기정 의원 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주승용·변재일·김우남·이윤석·김영환·강기정·강창일·최규성·김성곤·김광진 의원 발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014. 4. 25 문희상·김광진·박기춘·윤호중·정세균·한명숙·이미경·강동원·설훈·김윤덕·김영주·안규백·김관영·진선미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4 이철우·장윤석·황인자·박명재·서상기·홍지만·윤재옥·강은희·이완영·권은희 의원 발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정청래·부좌현·박주선·정성호·박민수·김영록·김광진·강기정·박남춘·진선미·김우남 의원 발의)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3. 7. 2 안효대·강석호·이철우·이노근·염동열·박인숙·김용태·신의진·김재경·이재영·윤진식·김정록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7건 안전행정위원장 보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2. 18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 경대수·안홍준·이한성·김우남·유의동·김재원·조원진·이인제·최규성·문정림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 경대수·안홍준·김승남·이한성·박민수·김종태·유의동·조원진·이인제·문정림 의원 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

(2015. 2. 16 유승우·노철래·송영근·이만우·강기윤·강은희·강석훈·김광립·박명재·정우택·황주홍 의원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

(2014. 12. 30 이운룡·유의동·조명철·류성걸·

유일호·박대동·이강후·김상민·김동완·강길부·신성범·정갑윤 의원 발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12. 29 정부 제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윤명희·김상훈·김승남·김종태·박윤옥·박인숙·서청원·송영근·이노근·전순옥 의원 발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윤명희·김상훈·김승남·김종태·박윤옥·박인숙·서청원·송영근·이노근·전순옥 의원 발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11 정부 제출)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김용남·황영철·김종태·송영근·홍철호·주영순·최봉홍·권성동·배덕광·문대성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2. 22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2 강석호·나성린·이노근·김성태·박민식·김태원·박대동·신경립·문대성·함진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5. 2. 16 민홍철·문병호·이윤석·박민수·주승용·이개호·조경태·노영민·박주선·변재일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수정에 관한 청원

(2015. 6. 26 경기 동두천시 방죽로 23 동두천시의회

(생연동) 장영미 외 6인으로부터 정성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예술교과군 내 ‘무용’ 과목 개설에 관한 청원

(2015. 6. 26 서울 종로구 혜화로 33(명륜1가 36-69) 201호 김화숙으로부터 이재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2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미용예술진흥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15. 7. 2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7리 동주 빌라 가동 401호 최종철로부터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추천의뢰서 제출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5. 6. 29 교육부장관 제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5. 7. 1 통일부장관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경제에 관한 질문서(4건)

(이상 4건 2015. 7. 2 신학용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2015년도 해양수산물발전계획보고서

(2015. 6. 30 해양수산부 제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14년 추진실적 및 '15년 시행계획 보고

(2015. 6. 30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이상 2건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송부

2014년도 연합뉴스 경영평가보고서

(2015. 6. 30 뉴스통신진흥회 제출)

6월 3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금융안정보고서

(2015. 7. 1 한국은행 제출)

7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제335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	2015년 7월 8일 오전 10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
요 구 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외 159인

(2015. 7. 3)